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0월 8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9. 10.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무2과장 김호영)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 및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모범납세자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나. 수수료 감면 제외조문 정비(안 제6조제3항)

다.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지움·변환작업이 필요없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무료로 개정(안 별표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7. 24. ~ 8. 13.)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경감하여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복제시의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알 권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6조제2항]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 [안 제6조제3항] 수수료 감면 제외 조문 정비
 - 안 제6조제2항 신설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수수료 감면 제외 조항 추가
- [안 별표 제3호] 전자파일의 복제 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 및 변환작업이 필요없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매체비용 별도)
 - ※ 정보공개 처리 또는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이나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 징수

다. 종합 의견

-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안 제6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800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항임.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세분만 해당)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신설하는 본 조항은 근거법과 유권 해석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우리구 재정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8년도 모범납세자는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건수 640건이므로 연간 수수료 경감액은 25만 6천원이나
- 모범납세자 세목별 과세증명서 경감에 따른 자치구 수입감소분은 서울특별시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전금을 지원하므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수료 감면 제외 조문 정비(안 제6조제3항)

- 모범납세자가 반복적 상업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과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수수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지움작업 또는 변환작업이 필요없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안 별표 제3호)

-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12.21.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상위법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3.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